

20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5-30-01
연구보고서-31

I S S U E P A P E R

통일한국 사회통합을 위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수행과제명 ·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연구 (I)

과제책임자 ·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통일한국 사회통합을 위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수행과제명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연구(I)

과제책임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41

 e-mail: hkchang@kwidimail.re.kr

요약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여성가족정책의 중요성과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 다섯 개의 주요 여성가족 이슈들(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가족문화, 여성노동, 여성아동건강, 돌봄서비스)을 조명·심층분석하여 통일준비과제, 통일직후시급 추진 과제, 통일한국 중장기과제를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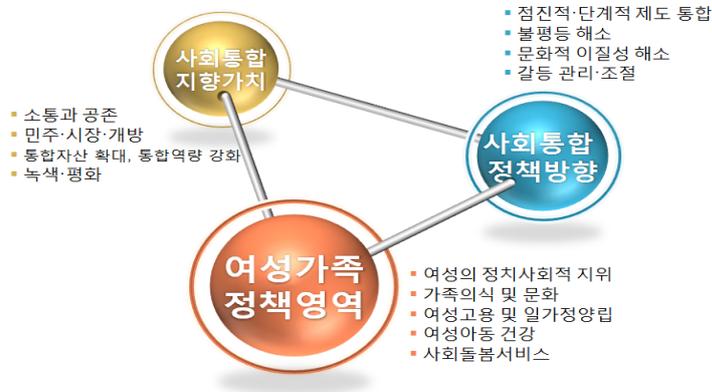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장혜경·김소영·최진희·김병로·박성미(2015).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전망 연구(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여성가족정책

-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필요함.
 - 원칙적으로 통일 후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제도통합의 과정에서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협력과 지원, 통합의 구심력을 확대하는 공유가치 문화의 확산, 그리고 갈등과 분쟁에 대한 관리 및 조정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정책방향에는 소통과 공존, 민주·시장·개방, 통합 자산확대 및 역량강화, 녹색·평화등의 가치가 내재되어야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정책들이 실질화 될수 있음.

- 그런데 통일론은 여전히 엘리트 남성 중심의 정체(正體)및 경제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 통일론의 붐업(boom-up) 작업이 필요한 가운데 특히 남북한 사회의 생활문화 통합의 요소를 발굴하고 확대함으로써 통일논의의 통합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생활문화와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할 주제가 여성 및 젠더이며 가족의 문제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관행화된 성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여성과 젠더라는 주제를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및 가족 접근의 영역으로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가족가치와 가족문화, 노동과 일가정양립, 여성과 아동의 건강, 돌봄서비스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네 가지 가치를 유념하면서 사회통합 정책방향을 견지해 갈 때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 핵심 개념간의 연결관계

- 다섯 개의 여성가족주제의 접근은 산학연 위탁과제와의 협동으로 추진되었으며 주제별 수위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통합, 이질성, 통일상황의 정책환경, 통일시 핵심이슈, 통일상황의 당면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모색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남북한 상황과 북한이탈주민 및 독일사례를 반영함.

2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가. 정책방향

-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은 비전과 목표, 전략을 포함함. 그 결과 성인지적 관점의 수립, 여성·가족관련 남북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 통합기반의 마련, 여성·가족제도 통합의 점진적·복합적 접근의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됨.

1) 성인지적 관점 수립

- 통합의 구심력을 확대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과 공유가치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성평등은 통일한국의 문화적 이질성과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할 미래적 가치가 될 수 있음

- 성인지적 관점의 수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남북한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체제와 국방의제의 전면 부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성·가족의제의 주변 부화를 방지할 수 있음.
 - 성인지적 관점은 남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요소와 양성평등 정책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지역 및 체제,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통일과 젠더지형에 대한 교차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임.
 - 전통을 넘어선 미래지향적 가족가치와 문화조성을 위해 성평등한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같음이라는 이름에 근거한 문화통합이 아닌 미래지향적 가족가치와 문화조성을 위해 성평등 가치와 관점의 수립은 매우 중요함.

2) 여성·가족 관련 남북한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 통합 기반 마련

- 통일한국의 여성·가족 정책은 남북한의 제도 격차와 차별을 해소해 실질적인 구조 통합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해야함. 이를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지위와 관련한 불평등 해소뿐 아니라 가족·노동영역에서의 성불평등 구조 개선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돌봄서비스 및 건강정책의 제도 격차 해소 등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 북한여성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노동권 확보,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구조의 수립을 위한 지원 인프라와 제도 확대 등을 통한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개선

- (돌봄서비스) 남북한 돌봄서비스의 인프라와 질적 수준 제고 등을 통한 격차 해소와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포괄적 시행으로 북한의 아동발달이나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여성고용 확대와 생활 안정 보장
- (건강정책) 북한지역 대상으로 고위험 요인 감소,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위기관리와 건강개선, 그리고 개선된 건강상태의 지속 유지를 위한 시스템화를 통한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조기 완화

3) 여성·가족제도 통합의 점진적·복합적 접근

-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은 사회적 갈등과 정서적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여성·가족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전략으로 점진적이며 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설정해야함.
- (점진적 접근) 두 개의 문화와 규범, 제도가 만날 때 집합 혹은 수정되거나 타협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 일정하게 수립 혹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전환됨. 이러한 전환에서의 방법은 일시적 방법보다는 점진적인 통합 방식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일 준비부터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의 의제를 논의하고, 남북한 제도통합을 협의하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것임.
- (복합적 접근) 세부적인 정책과제들은 남북한의 가용 가능한 자원과 역량,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하도록 함.

나. 정책과제

- ‘점진적·복합적 접근’이라는 방향성에서도 논의했듯이, 통일이 어떤 현상을 낳을지 예측 자체가 어렵고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한

의미와 차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방에 작용하는 단일한 해결책이 있을 수는 없음.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복합적이고, 멀리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 세부 정책과제는 통일준비과제, 통일직후 시급추진과제, 통일한국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함. 이 구분은 순차적인 시기에 따른 구분이기 보다 앞으로 살펴볼 각 정책과제의 내용적 특징에 따른 구분임.

1) 통일준비과제

- 현행 정책의 내실화 및 기존 인프라의 확충과 통일한국을 위한 남한 사회의 준비 수준 제고가 필요한데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는 주체는 남한 정부임
- 북한이탈가족·여성 관련 정책의 내실화
 - 북한이탈 여성·가족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주의 체계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봉착하게 되는 가족문제와 생활문화적인 괴리에서 오는 부적응과 적응의 과정을 밝히고, 이들이 적응과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지원서비스 모듈화
 - 비공식 일에 종사했던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비공식 노동자를 무직자 혹은 부양자로 취급하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직업 분류체계에 대한 재검토
- 남한의 여성·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성평등한 지위를 위해 저임금 일자리의 질 향상 및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구조를 수립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성을 갖는 서비스 구조, 보육의 질 제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향상 등 돌봄체계 재정비

- 통일대비 여성·가족 관련 기본법 검토
 - 여성·가족정책의 근간인 「건강가정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통일대비 전략 마련

-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남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통일 이후 북한 지역 내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 중요한데 현재 남한 내 지자체 역시 여성·가족정책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행정역량 강화에 중앙정부의 투자

2) 통일 직후 시급추진과제

- 남북한 서로 다른 정체(政體)와 정체(政體), 사회와 사회의 만남은 불가피하게 사회경제적 혼란과 위기를 수반할 것임. 이는 현실적으로 북한사회의 취약집단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도기를 설정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남북 간 통합을 추진해야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멀리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별도로 과도기에 적합한 긴급처방이 필요하며, 남한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과도기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함.

- 취약집단에 대한 긴급 지원
 - 과도기 여성·가족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이 생명의 위협, 경제력의 상실, 정서적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위협에 처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임
 -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긴급의료보건서비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모자 1,000일 패키지 사업’, 여성과 아동의 영양결핍 해결을 위한 ‘SUN 로드맵 수립’,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의료보건서비스 운송전략

수립 등 여성과 아동의 건강 증진 방안 모색

-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선별적 돌봄서비스의 한시적 제공) 남한과 북한의 제도 및 인프라를 활용한 통합 보육체계 마련과 과도기 노인, 장애인에 대한 선별적 돌봄서비스의 한시적 제공
- (실업자에 대한 구직서비스 및 일자리정책) 고용서비스의 효율화나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부조와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소득보장정책)의 결합, 재정을 투입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병행,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시행

■ 민관협력을 통한 행정력 집중

- 과도기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한 긴급 지원에서는 무엇보다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과도기의 혼란과 위험을 신속하게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 남한의 비영리기관이나 복지관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해서 민관 협력 형태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

3) 통일한국 중장기과제

- 남한사회가 북한사회를 견인하여 북한사회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장기적 정책과제의 핵심이 될 수 있음.
- 중장기적 정책추진의 컨트롤타워로서 ‘통일한국여성가족위원회’(가칭) 구성
 -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 마련 필요. 통일한국 여성·가족의 ①비전 수립, ②정책의제 발굴 및 ③추진전략 도출 등의 역할 수행
 - (비전 수립) 미래지향적 가족가치와 문화라는 공통의 지향점에 근거한 공동의 비전 수립

- (정책의제 발굴) 여성의 대표성 보장, 여성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비정부기구의 활성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쟁점 공론화 및 의제화, 북한여성의 빈곤화 방지 및 노동권 확보, 저출산 문제 예방 및 인구의 질적 향상 등의 정책의제 추진
- (역할수행) 전달체계, 인력, 소요비용, 자원마련 방안 등 추진전략 세밀한 구성



[그림 2] 통일한국여성가족위원회(가칭)의 목적 및 역할

- 남북한 성평등 관련 법제 통합(「통일한국양성평등법」(가칭))[첨부 1]
 - 남한의 「양성평등기본법」과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성의제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도구로 활용 가능
 - 「통일한국양성평등법」(가칭)에 성차별금지 및 평등한 노동시장지위 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통일한국의 성평등 개념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치 제시

- 정치 행정 분야의 여성대표성 보장, 성평등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 여성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방안, 성주류화 정책 등 포함
-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 인프라 구축
- 통일한국의 중장기적 정책과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여 남한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통일한국의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 (보편적 돌봄정책 인프라의 점진적 구축)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회화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되, 북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별적 접근 및 대상자 특성을 감안한 접근과 양극화를 줄어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구축) 의료제도·건강보험·보건의료자원 등을 포함한 의료체계(health care system), 전염병관리·식수 및 환경위생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체계(public health system)에 대한 정책개발
 - (일차보건의료)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포함한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흔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필수의약품의 비치와 공급’, ‘전통의료’, ‘영양 공급’, ‘충분하고도 안전한 물의 공급과 기본적인 환경위생’, ‘보건교육’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는 통합적 접근
 - (성교육) 유아기에서부터 학동기 청소년, 미혼남녀에 이르기 까지 각 발달단계에 적절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여 올바른 성 지식 및 건강행위 실천을 통해 생식건강 강화 도모
-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 행정역량 강화
- 남한과 북한과의 차이를 넘어, 북한 내에서의 지역 간 차이를 감안하여 보다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의 행정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으로 방안 모색
 - 돌봄서비스 제공 시 북한 인력의 재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남한 인력과의 통합운영 방안 강구

3 기대효과

- 전반적으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주요 여성가족 주제들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이들 주제들 간의 유기적 연계성 하에 매우 포괄적·심층적 연구를 시도함.
- 지금까지의 통일준비 정책과 연구들에서 간과되어온 사적 영역이나 생활문화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주요 이슈별 남북비교를 시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한 것임.
- 성의 지위에 대한 접근과 가족의식 및 가치의 문화적 접근이 중요하고 이러한 접근을 통해 통합을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노동·건강·돌봄정책 간 연계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개념화한 것은 통일한국 통합적 여성가족정책의 큰 맥을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음

참고자료



장혜경·김소영·최진희·김병로·박성미(2015).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여성정책과),
고용노동부(여성고용과), 통일부(정책기획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자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복지정책과)

관계부처 : 행정자치부

〈첨부〉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가칭)의 내용 마련의 준거로서 남북한 양성평등 관련 법 비교와 시사점

양성평등기본법」 주요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주요내용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안) 마련의 시사점
법제명	「양성평등기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안) 마련의 시사점
목적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정의: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 해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보장 -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 -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노력 	<p>제1조(여성권리보장법의 사명)</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고록 하는데 이바지 한다.</p> <p>제2조(남녀평등의 원칙)</p> <p>남녀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의 원칙과 정의를 마련 -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의와 기본 이념은 남북 공통의 정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기본계획 등 (제7조·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양성평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p>제4조(여성권리보장계획)</p> <p>국가는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년차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p>	<p>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p>
추진체계 (제11조·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 - 실무위원회(현행)와 분과위원회(신설)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필요한 전담전문인력 지정 (신설) 	<p>제5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여성권리보장업무)</p> <p>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p> <p>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한국 양성평등위원회(가칭) - 남북한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 가동

「양성평등기본법」 주요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주요내용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안) 마련의 시사점
성주류화 조치 (제1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성주류화 조치 의무 규정	제6조(각급 지방인민위원회의 여성권리보장업무) 제7조(근로단체의 여성권리보장업무) 여성동맹은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여성들의 조직이다.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의와 각급 여성동맹조직은 이 법과 녀 성동맹규약에 따라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 으로 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 통계, 교육 등 (제15조- 제18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도입		- 남북한(지역별) 및 성별영향 평가 - 성인지 통일교육
국가성평등 지수 등 (제19조)	- 국가성평등지수 조사·공표 등에 관한 근거 마련 - 지역성평등지수 조사·공표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적극적조치 (제2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선거권과 피선거권) ...국가는 여성들의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각급 인민회 의에서 여성대의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한다. 제15조(여성간부의 등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간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등용하여	- 정치, 행정 분야 및 통일관련 기구의 여성할당제 실시

정책결정과 장·공직 참여 (제21조· 제22조)	「양성평등기본법」 주요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주요내용	「대한민국 양성평등조약」(안) 마련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 마련 근거 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관리직 목표제 등 시행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노력 규정 	<p>야 한다. 간부선발과 양성, 임명사업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p>	
정치 참여 (제23조)		<p>제27조(노동조건외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노동에 마음 놓고 참가할 수 있도록 타이어소, 유치원, 편의시설 같은 것을 잘 꾸리고 바로 운영하여야 한다.</p> <p>제28조(로터베치에서의 차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임원을 받을 경우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는 직종이나 부서를 제외하고는 성별 또는 기타 결혼, 임신, 해산 같은 것을 이유로 여성을 받지 않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p> <p>제29조(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 제30조(여성에게 금지된 노동분야와 직종) 제31조(노동보수에서의 남녀평등)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같은 노동에 대하여 여성에게 남성과 똑같은 노동보수를 주어야 한다.</p> <p>제32조(기술, 기능자격 및 급수관정에서의 남녀평등) 제34조(부당한 제적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법 내용을 반영 - 남한의 기본계획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없고, 대신 근로 기준법에 포함되어 있음.
경제활동 참여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실현 근거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관련 규정 추가 		

「양성평등기본법」 주요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주요내용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안) 마련의 시사점
모·부성권 보장 (제25조)	- 모·부성권 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임신, 산전산후휴가, 쫓겨나는 시간 같은 것을 이유로 여성을 직장에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제33조(산전산후휴가의 보장) 국가적으로 여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 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하루로동시간은 6시간이며 생활비를 전액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지원 (제2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을 통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성차별 등 (제29조·제32조)	-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 신설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토록 함.		제37조(인신의 불가침권) 제39조(유괴, 매매행위 금지) 제40조(매음행위금지)	- 남북한 법을 반영, 성희롱 조항 포함
복지·건강 증진 (제33조·제34조)	- 여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 강구 -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		제38조(건강, 생명의 불가침권)	-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양성평등 주간 (제38조)	- 양성평등주간			- 통일한국 양성평등주간: 세계 여성의 날 공동기념, 주간으로 설정

「양성평등기본법」 주요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주요내용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안) 마련의 시사점
여성친화 도시 (제39조)	-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		
국제협력 등 (제40조·제41조)	- 국제개발협력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규정 -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 규정 신설	제9조(국제교류와 협조) 국가는 여성권리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양성평등 기금 (제42·제44조)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국제협력 관련사업의 지원		- 남북여성 공동 행사 정례화 - 통일한국 양성평등기금 조성 - 통일의제 다루는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지원(제51조)	-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 출처: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박선영(2014), 1-8쪽에서 재구성,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의 주요내용은 장명봉 편 (2015), 1159-1163쪽에서 재구성.